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2-133 |
|----------|--------|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고,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표현을 수정하여 법령에 맞는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위원회 조항 재정비 및 근거법 명시(안 5조의 2)

다.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 변경 및 정비

라.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표현 수정 및 문맥 재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10. 6. ~ 10. 26.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자체개선안 동의

5)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 11.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 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을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할지역에서”로,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을 “판매대금 등을 적립 및 관리하기 위하여”로,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를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로 한다.

제2조 중 “원할한”을 “원활한”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관할지역 안”을 “관할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을 “관리·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명 이내”를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 관련분야”를 “청소·재활용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직”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되”로,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자기와”를 “본인과”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를 “심의에서는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위원”을 “위원장은 위원”으로, “해촉”을 “그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⑦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4제2항 중 “심의하고”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의 제목 “(간사 및 수당)”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의 사용”을 “기금”으로, “목적에는”을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의”를 “기금을 그”로 한다.

제8조 중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을 “제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를 “기금출납부에”로, “정리”를 “비치”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단위 : 원)

| 연월일 | 적 요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 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할지역에서 ----- ----- - 판매대금 등을 적립 및 관리하기 위하여 ----- -----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p> |
| <p>제2조(기금의 설치)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p> | <p>제2조(기금의 설치) ----- 원활한 ----- ----- ----- -----.</p> |
|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p> |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관할지역 안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 4.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3. ~ 6.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

제3조(기금의 조성) -----
-----.

1. -----
----- 관할지역-----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에 -----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
-----.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 관리·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

-----.

<삭 제>

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안전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
----- 6명-----
-----.

④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1. (현행과 같음)

2. ----- 청소·재활용 관련 -----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
-- 하되 -----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 본인과 -----
----- 심의에서는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 설>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4(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⑦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위원-----

----- 그 위원을 해촉-----.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5조의4(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

<신 설>

제5조의5(간사 및 수당) ① (생략)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제4조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단서조항삭제 ‘98.01.16, 개정 2012.12.31.)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간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
----- 목적
으로 -----.

② ----- 기금을 그 -----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
부에 -----
----- 비치-
-----.

<삭 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 년월일 | 예 | 금 | 인 | 출 | 잔액 |
|-----|---|---|---|---|----|
| | | | | | |

<삭 제>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 연월일 | 예 | 금 | 인 | 출 | 잔액 |
|-----|---|---|---|---|----|
| | | | | | |

| 재원 | 예금 종류 | 금 액 | 이 율 | 기 간 | 적 요 | 금 액 | |
|----|----------|--------|--------|--------|--------|--------|--|
| | | | | | | | |

| 재원 | 예금 종류 | 금 액 | 이 율 | 기 간 | 적 요 | 금 액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단위 : 원)

| 연월 일 | 적요 | 수 입 | 지 출 | 결 재 | | | |
|---------|----|--------|--------|--------|------------------|--------|--------|
| | | | | 담 당 | 담 당 팀 장 | 과 장 | 국 장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단위 : 원)

| 연월일 | 적요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
| |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강미연 |
| 연 락 처 | 02-3153-9214 |